부 록

Ⅰ. 행정조직

Ⅱ. 2015년도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Ⅲ. 2015년도 예산

Ⅳ.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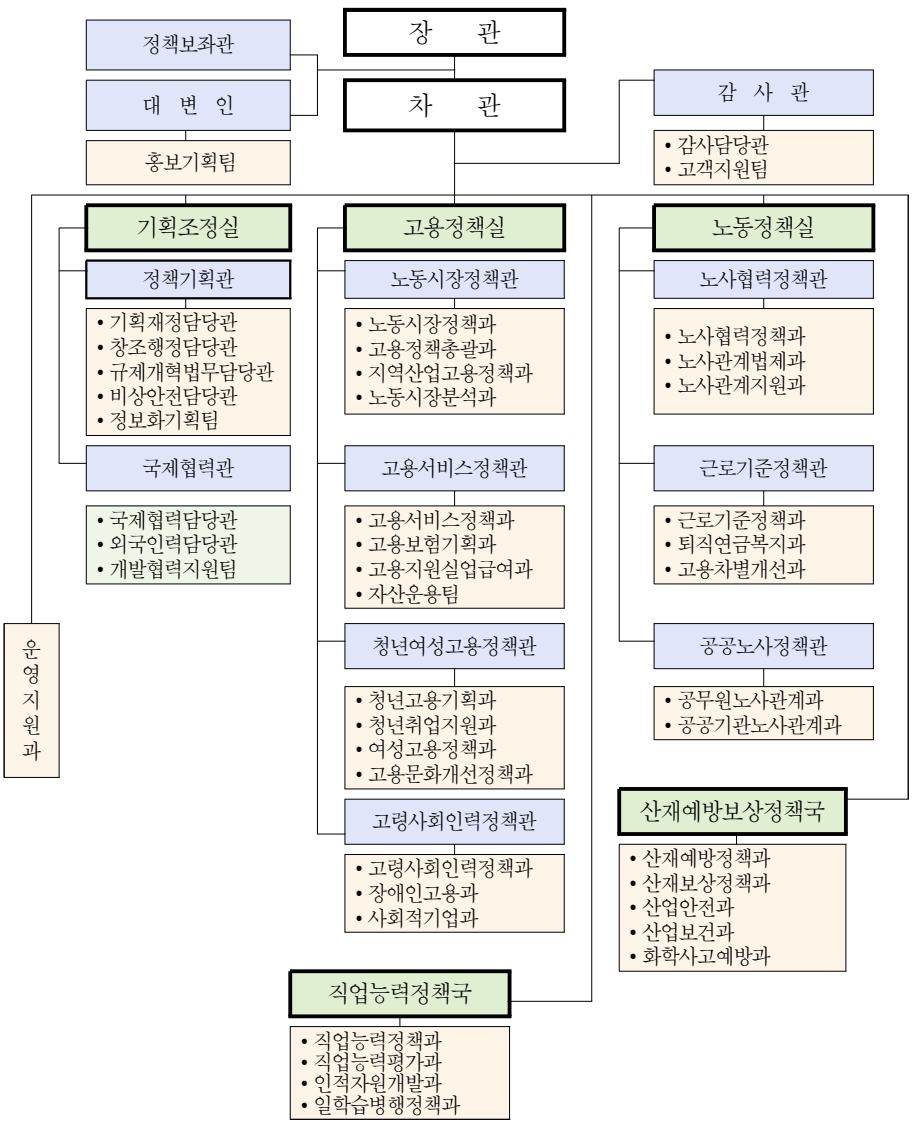
Ⅴ. 주요 웹사이트

Ⅵ. 2015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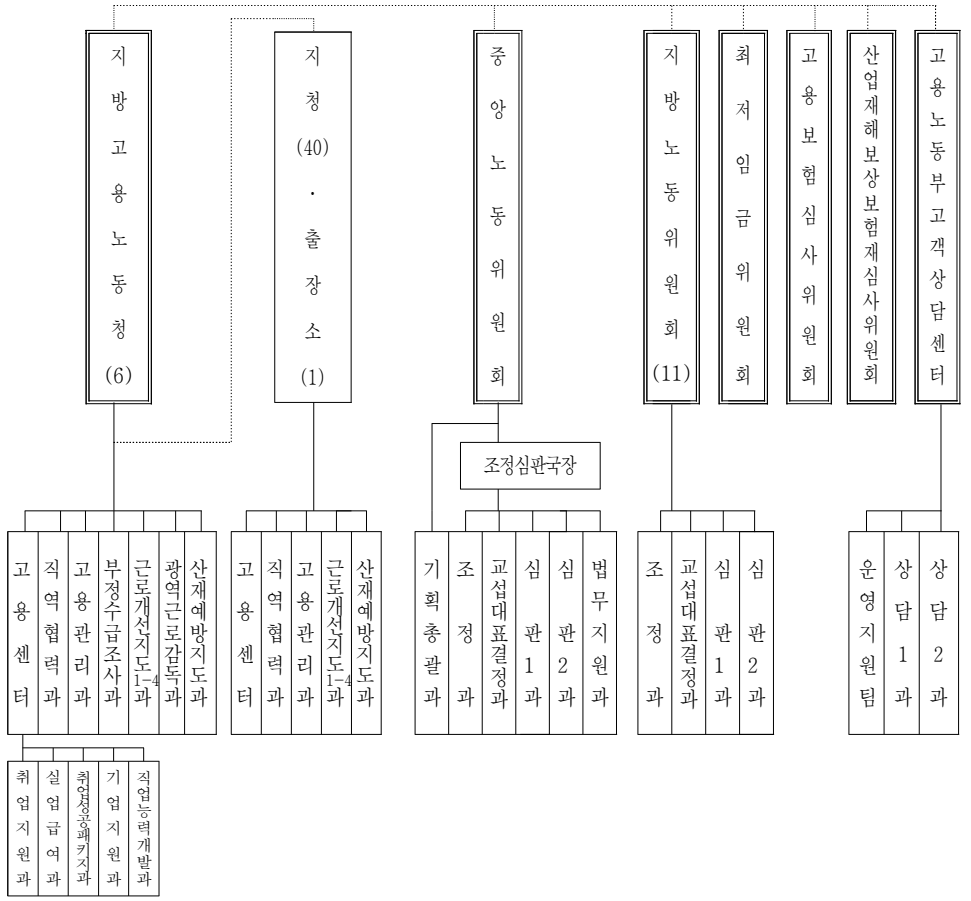
Ⅰ. 행정조직

1 조직도

본부 : 3실 2국 11관 39과 5팀, 5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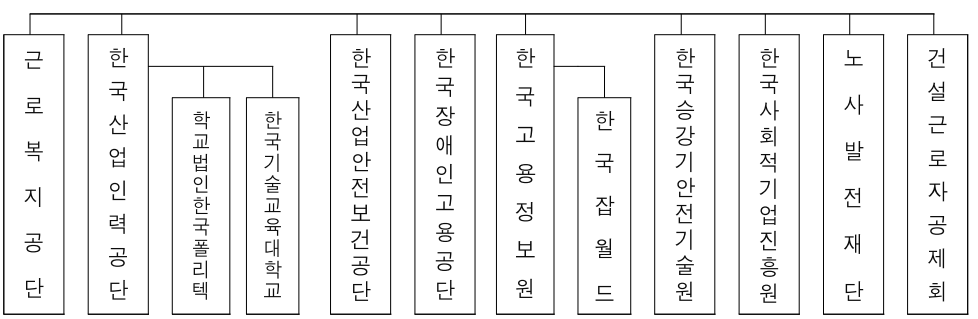


소속기관 :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15개 위원회, 1개 상담센터(책임운영기관)



산하 공공기관

- 조직 : 준정부기관 6개, 기타 공공기관 6개



2 정원

기관별 / 직급별	계	본 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 동 위원회	최저임금 위 원 회	산재재심사 위 원 회	고객상담 센 터
총 계	5,783	551	4,785	364	8	27	48
정무직	3	2		1			
별정직	4	4					
일반직 소계	5,776	545	4,785	363	8	27	48
고위공무원	45	17	6	20	1	1	
3·4급	17	7	9	1			
4급	78	32	33	11		1	1
4·5급	79	19	56	3	1		
5급	551	220	275	51		3	2
6급	1,106	111	835	134	2	10	14
7급	1,253	111	1,017	85	2	11	27
8급	1,109	8	1,070	26	1		4
9급	1,528	17	1,478	31	1	1	
기록연구사	8	1	6	1			
전문경력관	2	2					

3 소관 법령

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118	40	40	38

※ 공동법률·대통령령·부령을 포함한 통계임

실 국 명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고용정책실 (13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2015. 3. 27.)	같은 법 시행령 (2015. 5. 26.)	같은 법 시행규칙 (2013. 6.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2015. 7. 24.)	같은 법 시행령 (2015. 10. 23.)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7. 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13. 3. 23.)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고용보험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1.)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3. 24.)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0.)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 1. 21.)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23.)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직업안정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13. 5. 22.)	같은 법 시행령 (2013. 10. 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30.)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0.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4. 5. 28.)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0. 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3. 5. 22.)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4.)	같은 법 시행규칙 (2012. 2.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5. 5. 18.)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3.)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 2. 1.)	같은 법 시행령 (2014. 8. 6.)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7. 17.)

실 국 명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직업능력 정책국 (6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0.)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0.)
	국가기술자격법 (2014. 5.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1. 6.)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 21.)
	숙련기술장려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3. 8. 20.)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1. 3. 9.)	같은 법 시행령 (2014. 11. 19.)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1.)	–
	자격기본법 (2013. 4. 5.)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1.)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노동정책실 (16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 5. 20.)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노동위원회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7. 20.)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7.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10. 6. 4.)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1994. 3. 9.)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5. 25.)	같은 법 시행령 (2013. 3 23.)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013. 3. 23.)	같은 법 시행령 (2013. 11. 20.)	–
	근로기준법 (2014. 1. 21.)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3. 23.)
		근로감독관규정 (2010. 10. 27.)	근로감독관증규칙 (2013. 6. 19.)
	최저임금법 (2012. 2. 1.)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1.)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공인노무사법 (2014. 5. 20.)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15.)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0.)
	근로복지기본법 (2015. 7.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0.)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 2.)

실 국 명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노동정책실 (16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2015. 1. 20.)	같은 법 시행령 (2015. 6. 15.)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6. 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같은 법 시행령 (2014. 9. 18.)	같은 법 시행규칙 (2007. 6. 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3. 18.)	같은 법 시행령 (2015. 12. 30.)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4. 11. 19.)	같은 법 시행령 (2013. 12. 16.)	같은 법 시행규칙 (2012. 12. 2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3. 3. 23.)	같은 법 시행령 (2013. 3. 23.)	같은 법 시행규칙 (2012. 12. 27.)
산재예방 보상정책국 (4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2013. 6. 4.)	같은 법 시행령 (2015. 2. 1.)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5. 12. 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13.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 5. 18.)	같은 법 시행령 (2015. 4. 14.)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4. 2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4. 12.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10. 6. 4.)	같은 법 시행령 (2010. 7. 12.)	–
기획조정실 (1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4. 1. 28.)	같은 법 시행령 (2014. 12. 9.)	같은 법 시행규칙 (2015. 12. 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12. 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 12. 30.)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1. 12. 19.)

※ 괄호 안의 날짜는 공포일(여러 차례 개정된 경우 최종 개정된 법령의 공포일)임

※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가족부와 공동 법률임

Ⅱ. 2015년도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1 고용정책기본법령

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공포연월일: 2015. 3. 27.	시행연월일: 2015. 3. 27.
법령번호: 법률 제13262호	담당과: 노동시장정책과

주요 내용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우선선발을 지원하고,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망의 구축 및 개인정보의 연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또한 개인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연계·보유·파기 및 오남용과 관련한 벌칙 등을 함께 규정

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 12.	시행연월일: 2015. 1. 12.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046호	담당과: 노동시장정책과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무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2. 26.	시행연월일: 2015. 3.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122호	담당과: 노동시장정책과

주요 내용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전년도 매월 말일 사용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변경

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3. 2.	시행연월일: 2015. 3. 2.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부령 제126호	담당과: 노동시장정책과

주요 내용

-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서 공시 기준일을 공휴일인 매년 3월 1일에서 매년 3월 31일로 변경하고, 대량 고용변동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한을 마지막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서 첫 번째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량 고용변동에 따른 이직자의 명단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고용보험법령

법령명: 고용보험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1. 20.
법령번호: 법률 제13041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4. 20.	시행연월일: 2015. 4. 2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208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6. 30.	시행연월일: 2015. 7.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368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 주요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육아휴직 등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방식 개선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의 확대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사후 지급 비율 상향 조정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8. 19.	시행연월일: 2015. 8. 19.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496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 주요 내용

-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2. 4.	시행연월일: 2015. 12. 4.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690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 주요 내용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 도입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도입
  -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 강화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2. 31.	시행연월일: 2015. 12. 3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844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 주요 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개정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7. 1.	시행연월일: 2015. 7. 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주요 내용

-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2. 7.	시행연월일: 2015. 12. 7.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주요 내용

-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법령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2. 30.	시행연월일: 2016. 1.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809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 확대
  -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의 규모 요건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개선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연도 중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법정 고용보험료 지원규모(고용보험가입자 수 10인 미만)가 초과되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출산전후휴가자 등을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조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고용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 완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함.

법령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2. 31.	시행연월일: 2016. 1. 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담당과: 고용보험기획과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월별보험료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를 통한 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와 관련된 신고·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4 직업안정법령

법령명: 직업안정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7. 21.
법령번호: 법률 제13049호	담당과: 고용서비스정책과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 등 야기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5. 18.	시행연월일: 2015. 5. 18.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31호	담당과: 고용서비스정책과

주요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 내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표 부착 의무화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법령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 법률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2015. 1. 20.
법령번호: 법률 제13043	담당과: 여성고용정책과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육아지원 대상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

6 사회적기업육성법령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7. 17.	시행연월일: 2015. 7. 17.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담당과: 사회적기업과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 해당 서류의 직접 제출의 방법 외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법령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1. 20.
법령번호: 법률 제13042호	담당과: 직업능력정책과

주요내용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법령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2. 30.	시행연월일: 2015. 12. 30.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810호	담당과: 직업능력정책과

주요내용

- 인터넷원격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
- 일률적인 직업훈련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능력단위별 모듈형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8 국가기술자격법령

법령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 21.	시행연월일: 2015. 1. 2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담당과: 직업능력평가과

▸ 주요 내용

-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미용사(메이크업) 종목 신설
  -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추세 등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미용분야의 면허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용(메이크업)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을 신설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확대
  - 학력 차별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학과 졸업자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을 개정
-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정비

9 숙련기술장려법령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1. 20.
법령번호: 법률 제13046호	담당과: 직업능력평가과

▸ 주요 내용

- 숙련기술장려 관련 각종 지원금의 지급 제한금액(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 및 지원제한 기간(5년의 범위) 등의 기준 근거 마련하고
  -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령

법령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공포연월일 : 2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7. 21.
법령번호 : 법률 제13048호	담당과 : 일학습병행과

주요 내용

- 국가·지자체의 직업훈련기관 평가 항목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운용 실태 및 시설·장비와 교원·직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1 노동위원회법령

법령명: 노동위원회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7. 21.
법령번호: 법률 제13044호	담당과: 노사관계법제과

주요 내용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범위 확대(공인노무사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화해 대상의 확대(심판사건 → 심판사건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
- 사건처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척 또는 기피사유 해당되는 경우 위원 회피근거 신설
- 사건당사자의 노동위원회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도 조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공시송달의 사유와 절차 신설

법령명: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7. 20.	시행연월일: 2015. 7. 2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420호	담당과: 노사관계법제과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는 판정서 등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송달의 방법을 정하고,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7. 20.	시행연월일: 2015. 7. 2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135호	담당과: 노사관계법제과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를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2 근로기준법령

법령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3. 23.	시행연월일: 2015. 3. 23.
법령번호: 법률 제127호	담당과: 근로기준정책과

주요 내용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함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3. 23.	시행연월일: 2015. 5.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152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보장이 되는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이외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12. 15.	시행연월일: 2015. 12. 15.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719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
-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 사유에 가입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추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가입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추가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3. 23.	시행연월일: 2015. 5. 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퇴직연금제도별 위험자산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확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 에서 100분의 70 확대

14 근로복지기본법령

법령명: 근로복지기본법	
공포연월일: 2015. 7. 20.	시행연월일: 2016. 1. 21.
법령번호: 법률 제13412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
- 둘 이상이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

법령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 2.	시행연월일: 2015. 1. 2.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1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사업주의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임차주택 등 사택을 포함

15 임금채권보장법령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7. 1.
법령번호: 법률 제13047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 체불근로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 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
-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의 증명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
- 채권자들이 체당금에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도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6. 15.	시행연월일: 2015. 7.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318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하고,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규정
-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가동기간에 대해 직상수급인을 기준으로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도록 특례
- 소액체당금 청구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업무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6. 30.	시행연월일: 2015. 7. 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32호	담당과: 퇴직연금복지과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의 비용지원 한도를 사업장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의 융자 하한액 및 횟수 삭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발급

16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2. 10.	시행연월일: 2015. 2. 10.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093호	담당과: 산재예방정책과

주요 내용

-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면서 유사한 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인력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 16.	시행연월일: 2015. 1. 16.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담당과: 산재예방정책과

▸ 주요 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함
-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검토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함
-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인력기준 중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자격대상자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증 간 형평을 유지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함

법령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연월일: 2015. 12. 31.	시행연월일: 2015. 12. 3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담당과: 산재예방정책과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이 25센티미터 이하의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의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연월일: 2015. 1. 20.	시행연월일: 2015. 4. 21.
법령번호: 법률 제13045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진료,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등을 추가
-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2. 10.	시행연월일: 2015. 2. 10.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094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포연월일: 2015. 4. 14.	시행연월일: 2015. 4. 14.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6196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함.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2. 13.	시행연월일: 2015. 2. 13.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5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3. 24.	시행연월일: 2015. 3. 24.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29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전문가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특이질병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함.
- 이송비 지급에 관한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오고 가는 것도 요양비를 지급하는 이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날부터 30일까지의 요양비는 요양을 받은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기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의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정함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4. 21.	시행연월일: 2015. 4. 2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담당과: 산재보상정책과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0. 22.	시행연월일: 2015. 10. 22.
법령번호: 노동부령 제137호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

주요 내용

-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새로 마련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2. 30.	시행연월일: 2015. 12. 30.
법령번호: 노동부령 제143호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

주요 내용

-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내국인의 채용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농업·축산업 및 어업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내국인 채용노력을 한 경우에는 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3일로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 중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략
- 업종별로 상이한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신청서식 정비

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 30.	시행연월일: 2015. 1. 30.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98호	담당과: 창조행정담당관

주요 내용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설 및 인력 증원(3명)
- 인력수급정책국을 폐지하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여 대상별 고용정책 강화
- 노사협력정책관을 노동실의 1관으로 개편하고 근로개선정책관(과)을 근로기준정책관(과)으로, 근로복지과를 퇴직연금복지과로 변경
- 지방관서(청·지청)에 지역협력과 및 고용관리과를 신설하여 센터의 지역협력, 피보험자관리, 인사, 외국인고용허가 등 이관·수행하고, 6개청에 부정수급조사과와 광역근로감독과 신설
- 2014년 고용복지+센터 확산 따른 인력 증원(18명) 및 '14년 통합정원 감축(54명)
- 대구서부지청의 청사 이전에 따른 대구청-서구서부지청 간 관할구역 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8. 24.	시행연월일: 2015. 8. 24.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14호	담당과: 창조행정담당관

주요 내용

- 일학습병행정책과 신설 및 인력 증원 3명 등 2015년 소요정원 인력 총 26명 증원 반영
- 13개 고용복지+센터 설치 및 이에 따른 인력 22명 증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연월일: 2015. 11. 11.	시행연월일: 2015. 11. 11.
법령번호: 고용노동부령 제114호	담당과: 창조행정담당관

주요 내용

- 17개 고용복지+센터 확산(9개 고용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26명
- 통합정원 감축 26명

Ⅲ. 2015년도 예산

1 세입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15년	2014년	증 감	%
계	643	584	59	10.1
○ 일반회계	643	584	59	10.1
- 재산수입	7	7	0	0.0
- 경상이전수입	636	577	59	10.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1)	(0.1)	0	0.0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0	0	0	0.0
- 기타경상이전수입	(0.3)	(0.3)	0	0.0

2 세출

총 괄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15년	2014년	증 감	%
계	21,610	21,019	591	2.8
일반회계	20,091	20,478	-387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8	-8	-1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619	435	184	42.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1	98	803	819.4

사업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
총 계	21,610	21,019	591	2.8
○ 일반회계	20,766	20,478	288	1.4
– 고용정책	11,683	12,103	−420	−3.5
– 직업능력개발	3,758	3,200	558	17.4
– 고용평등	84	390	−306	−78.5
– 노사정책	247	201	46	22.9
–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172	191	−19	−9.9
– 국제노동협력	134	149	−15	−10.1
– 기관운영	3,576	3,466	110	3.2
– 기금 전출금	1,113	778	395	5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	−8	−100.0
– 직업능력개발	–	8	−8	−100.0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619	435	184	42.3
– 산업재해예방	619	435	184	42.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1	98	803	819.4
– 노동행정지원	–	98	−98	−100.0
– 고용정책	818	–	818	818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
계	21,610	21,019	591	2.8
○ 일반회계	20,766	20,478	288	1.4
- 인건비	2,952	3,092	-140	-4.5
- 물건비	2,730	2,605	125	4.8
- 이전지출	13,714	13,808	-94	-0.7
- 자산취득	255	193	62	32.1
- 전출금	1,113	778	335	43.1
- 예비비 및 기타	2	2	0	0.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8	-8	-100.0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619	435	184	42.3
- 이전지출	619	435	184	42.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1	98	803	819.4

Ⅳ.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조사명	조사주기	조사항목/내용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반기	○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직자수, 이직자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	○ 근로시간,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급여, 사회보험현황 ○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격차 분석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부정기	○ 규모별, 노조유무별, 업종별 임금 교섭 타결 현황 ○ 임금동결·하향조정 현황
임금제도실태조사	연	○ 연봉제 및 성과 배분제 도입 현황 ○ 호봉급, 직무급, 직능급 운영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연	○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및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반기	○ 상용, 임시·일용, 외국인 근로자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연	○ 임금, 퇴직금등의 비용, 법정노동비, 법정외복지비 등 노동비용
장애인의무 고용현황(보고)	연	○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민간기업의 규모별 고용률
고령자고용현황(보고)	연	○ 고령자수, 고령자, 고용률 등 고령자 고용현황 ○ 정년제도 운영현황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보고)	연	○ 기관별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외국인고용 허가제현황(보고)	월	○ 외국인근로자 구인, 구직 신청건수 ○ 고용허가서 발급건수 ○ 근로계약체결건수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건수 ○ 입국자 및 취업자수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 종사자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수, 임금, 근로시간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알선실적(보고)	연	○ 연령별, 고용형태별, 고용기간별, 직종별, 고령자구인·구직자수, 취업 알선·취업자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분기	○ 계약만료자 조치현황(정규직 전환 등)

조사명	조사주기	조사항목/내용
사업종류별보험 적용 및 징수 상황(보고)	월	○ 고용보험적용 현황 ○ 고용보험료 징수·체납·결손현황 ○ 산재보험적용, 보험료 수납현황 ○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근로자 현황
직업훈련실시현황(보고)	연	○ 실업자 훈련실시 현황 ○ 재직자 훈련실시 현황 ○ 기능인력 양성훈련실시 현황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보고)	연	○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및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노사분규현황(보고)	연	○ 노사분규발생·해결·진행 및 분규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현황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실적(보고)	연	○ 개정규정적용특례 현황 ○ 개정규정적용특례 개선 현황
근로자파견사업보고(보고)	반기	○ 파견사업체수, 사용사업체수, 파견 근로자 등 근로자파견사업현황 ○ 파견기간별, 파견사유별근로자현황 ○ 파견근로자 임금
사업장감독 현황(보고)	부정기	○ 사업장감독 실시 업체수, 법위반업체수, 위반건수, 시정완료 업체수, 사법처리, 행정처분 건수 등 사업장 감독실적 ○ 예방점검 현황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조사·조치현황(보고)	부정기	○ 원·하청대상 사업장수 현황 ○ 불법파견 사업장수, 법위반건수, 법위반 조치내역 현황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연	○ 건강진단 실시사업장 현황 ○ 건강진단 실시근로자 현황 ○ 질병발생현황 ○ 사후관리조치현황
산업재해조사(보고)	월	○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형태별, 입사근속기간별, 연령별, 요일별, 시간별, 요양기간별, 휴업기간별, 산업별 등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급여 지급상황보고	월	○ 급여별·업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 현황
고용보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처리현황(보고)	연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처리현황 ○ 심사 및 재심사 청구내용
조정·심판 사건통계(보고)	월	○ 조정사건 처리현황 ○ 심판사건 처리현황
사업체 임금실태분석(가공)	연	○ 근로자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적용 영향률 ○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수 및 영향률 ○ 근로자 임금실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가공)	연	○ 사업체 및 종사자수

V. 주요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__ http://minwon.moel.go.kr/
- 영문홈페이지 __ http://www.moel.go.kr/english/
-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__ http://laborstat.molab.go.kr/
- 고용보험 __ http://www.ei.go.kr/
- 워크넷 __ http://www.work.go.kr/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 __ http://www.ilmoa.go.kr/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__ http://know.work.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__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고용센터 __ http://www.work.go.kr/jobcenter/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__ http://insurancesupport.or.kr/
- 취업성공패키지 __ http://www.work.go.kr/pkg/
- HRD-net __ http://www.hrd.go.kr/
- 외국인고용허가제(EPS) __ http://www.eps.go.kr/
- 퇴직연금홈페이지 __ http://www.moel.go.kr/pension/
- 건설근로자공제회 __ http://www.cwma.or.kr
- AA-net __ http://www.aa-net.or.kr/new_home/
- 청년취업아카데미 __ http://www.myjobacademy.kr
- 노동위원회 __ http://www.nlrc.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__ http://www.iaciac.go.kr/
- 최저임금위원회 __ http://www.minimumwage.go.kr/
- 근로복지공단 __ http://www.kcomwel.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__ http://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__ http://www.kosha.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__ http://www.kead.or.kr/
- 한국고용정보원 __ http://www.keis.or.kr/
- 한국잡월드 __ http://www.koreajobworld.or.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__ http://www.k-medi.or.kr/
- 한국폴리텍대학 __ http://www.kopo.ac.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__ http://www.koreatech.ac.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__ http://elti.koreatech.ac.kr/
- 노사상생플러스교육 홈페이지 __ http://nosaedu.nosa.or.kr/
- 일터혁신 지원 홈페이지 __ http://www.hpws.or.kr
- 임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__ http://www.wage.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 __ http://www.ncs.go.kr
-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__ http://www.ncs.go.kr/onspec/main.do
- 장년일자리 희망넷 __ http://www.4060job.or.kr

Ⅵ. 2015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1 노동시장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1일 ~31일	○ '14.4분기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 조치현황 조사
1월 1일 ~31일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1월 29일	○ '14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2월 2일 ~27일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2월 27일	○ '15년 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3월 2일 ~31일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3월 19일	○ 제41차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영향평가 '14년 결과보고 및 '15년 대상과제 선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최근 고용동향 및 고용정책 추진현황, 노동시장 구조개선
3월 25일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 기업의 고용변동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
3월 30일	○ '15년 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4월 1일 ~30일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4월 1일 ~30일	○ 1분기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 조치현황 조사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4월 1일 ~5월 15일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직종별 구인·채용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 등
4월 29일	○'15년 3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4월 30일	○'14년 10월 기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군구별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등 공표
4월 29일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등
5월 1일 ~29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5월 1일 ~29일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군구별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등 조사
5월 11일 ~6월 12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임금, 퇴직금,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등 노동비용
5월 28일	○'15년 4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6월 1일 ~30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6월 29일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직종별 구인·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 등
6월 29일	○'15년 5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7월 1일	○201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전체 근로자 4,593천명중 소속 근로자 3,676천명(80%), 소속 외 근로자 918천명(20%) * 대상 기업 3,240개소중 3,233개소 공시(99.8%)
7월 1일 ~31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7월 1일 ~31일	○2분기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 조치현황 조사
7월 1일 ~8월 14일	○사업체노동력조사 6월 기준 부가조사 실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운영체계, 연봉제,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 조사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7월 15일 ~10월 15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7월 30일	○'1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 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8월 3일 ~31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8월 4일	○제42차 고용정책심의회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8월 27일	○'15년 7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8월 31일	○2014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 비용 조사 결과 발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임금, 퇴직금,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등 노동 비용
9월 1일 ~30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9월 8일	○제43차 고용정책심의회	○2015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9월 25일	○'15년 8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10월 1일 ~30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10월 1일 ~11월 13일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직종별 구인·채용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 등
10월 1일 ~31일	○3분기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 조치현황 조사
10월 29일	○'15년 9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10월 28일	○'15년 4월 기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군구별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등 공표
11월 2일 ~30일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11월 2일 ~30일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군구별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등 조사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1월 27일	○ '15년 10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12월 1일 ~31일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
12월 15일	○ 일자리창출 유공자 시상식	○ 정부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모범을 보인 유공자에 포상(총 145점)을 하여,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12월 29일	○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채용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미충원인원 등
12월 29일	○ '15년 1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동향(종사자수, 노동이동 등) 및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공표

2 고용서비스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2월 9일	○2015년 제1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2014회계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안) ○2014년도 고용보험 기금 여유자산 운영성과
2월 12일	○2015년 제1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201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안) ○2014년도 고용보험 기금 여유자산 운영성과
3월 12일	○2015년 제1차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개최	○2014년도 고용보험사업 평가결과 ○2015년도 고용보험사업 평가계획(안)
3월 13일	○2015년 제2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3월 20일	○2015년 제2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2014년 고용보험사업 평가 결과 및 2015년 고용보험 평가계획(안) ○고용보험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기준 수립 계획(안)
3월 27일	○2015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고용·산재보험기금 연간자산운용계획(안) ○주간운용사 선정 경과 및 계획 보고
4월 2일	○2015년 제2차 자산운용위원회	○책임투자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5년 1/4분기 자산운용계획(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결과 보고
4월 17일	○2015년 제3차 자산운용위원회	○우선협상대상기관 제안내용 발표 및 운영방안 토의
5월 6일	○2015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14년 자산운용성과 및 15년 자산배분 ○주간운용사 선정 경과 및 계획 ○리스크관리 현황 점검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점검
5월 15일	○2015년 제4차 자산운용위원회	○주간운용사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주간운용사 자문서비스(안) 보고 ○'15년 2/4분기 자산운용계획(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착수 보고
6월 1일	○2015년 제3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2016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안) ○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안) ○2015년도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주간운용사선정 경과
6월 1일 ~2일	○2015년 제5차 자산운용위원회 <서면심의>	○고용·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운용보수율(안) 심의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6월 3일	○2015년 제3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2016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안) ○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2015년도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주간운용사선정 경과
6월 12일	○2015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체계의 리스크관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체계의 리스크관리
6월 22일	○2015년 제4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진단
6월 25일	○2015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방안 등
6월 26일	○2015년 제6차 자산운용위원회	○주간운용사 운용허가(안) 심의 ○주간운용사 직접운용(안) 심의 ○하위운용사 후보군 선정기준(안) 심의 ○자산이관 진행경과 및 계획 보고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방안 보고
7월 2일	○2015년 제4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월 16일	○2015년 제5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여건
7월 17일 ~20일	○2015년 제5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8월 4일	○2015년 제6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실업급여 개편방안 노·사·공 의견 수렴
8월 11일	○2015년 제7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실업급여 개편방안(안) 세부 사항 논의
8월 12일 ~13일	○2015년 제7차 자산운용위원회 <서면심의>	○'15년 3/4분기 자산운용계획(안) 심의
8월 21일 ~24일	○2015년 제8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서면심의>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월 25일 ~27일	○2015년 제6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월 22일	○2015년 제9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 「실업급여 개편」 논의 경과 및 향후 일정
9월 24일	○2015년 제7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실업급여 개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월 1일	○2015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현황 ○위탁펀드 컴플라이언스 규정 개정(안)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보완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0월 21일	○ 2015년 제10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	○ 「실업급여 개편」 방안(안)
11월 16일	○ 2015년 제8차 자산운용위원회	○ 2015년 4/4분기 자산운용계획(안) 심의 ○ 대체투자 추진계획(안) 심의 ○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월 18일	○ 2015년 제8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 「실업급여 개편」 방안(안)
11월 23일 ~25일	○ 2015년 제11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30일	○ 2015년 제9차 고용보험문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월 14일 ~16일	○ 2015년 제12차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016년도 적용 고용·산재보험 기준보수 고시(안)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월 17일 ~18일	○ 2015년 제10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016년도 적용 고용·산재보험 기준보수 고시(안)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상향(무기계약 체결시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지급)
1월 1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제도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제도: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1월 7일	○민간 대체인력뱅크 1개소 선정·운영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 풀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력풀 운영체계
1월 14일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및 물량배정
1월 16일	○K-Move 스쿨-세계로프로젝트 통합운영	○유사중복사업 통합 운영(교육부의 세계로프로젝트를 K-Move 스쿨로 통합)
1월 19일	○청년취업인턴제 사전교육기관 선정	○청년취업인턴제 사전교육기관 7개소 선정
2월 1일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쏙쏙 노하우 시간선택제 이렇게 도입하세요 매뉴얼 제작 * 도입·운영 매뉴얼, 기업활용사례 등
2월 3일	○2015 강소기업 선정	○2015 강소기업 12,387개소 선정
2월 12일	○해외 K-Move 센터 추가 운영	○해외 K-Move 센터 3개소 추가 운영(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2월 24일 ~7월 17일	○스펙초월 멘토스쿨 과정 선정	○스펙초월 멘토스쿨 9개 과정(350명) 및 5개 과정(180명) 선정·운영
5월 21일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발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 후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발표
5월 28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일가양득 잡 페스티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 등
4월 16일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시행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신설, 시행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6월 25일	○ 인문계 전공자 고용촉진 방안 수립	○ 인문계 전공자 고용촉진 방안 수립·시행
7월 1일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 지원대상 조정(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및 지원방식 변경
7월 27일	○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마련	○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수립·시행
8월 25일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시행	○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시행
9월 1일	○ 전환형 시간선택제 매뉴얼 제작·배포	○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 제작 * 인사·노무관리 내용, 전환제도 도입·설계·실행 등
9월 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마련	○ 전환청구권이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연계한 제도 마련
10월 5일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	○ 2015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소 선정
11월 27일	○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발표	○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12월 11일	○ 일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 일가양득 캠페인 협약식·감사패 수여,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 우수사례 소개, 일·가정 양립 관련 명사 강연 및 토크콘서트 등
12월 21일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논의·확정, 발표 ①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②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 개발·활용 ③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강화 ④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책목표 수립, 점검강화

4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고령자고용촉진>		
1월 16일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및 물량배정
1월 16일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물량배정
1월 20일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 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조사
1월 27일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센터장 간담회	○'15년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사업계획 및 건의사항 수렴
4월 1일	○'임금피크제 이해' 책자 배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 운영 사례 등을 담은 '임금피크제 이해' 안내 책자 배부
4월 3일	○2015년 60세 정년 서포터즈 운영기관 선정	○60세 정년 서포터즈 운영기관 선정 및 물량배정
4월 10일	○이모작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이모작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물량배정
4월 15일	○'장년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 책자 배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장년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서 배부
4~5월	○'15년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8개 권역)	○'15년 임금피크제 등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공감대 확산과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도모
6월 19일	○장년고용지원제도 안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년 고용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안내
7월 22일	○'15년 상반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 및 장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월 27일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 배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위해 업종별 16개 기업의 사례를 정리한 '나눔과 상생의 약속,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
9.14~18	○장년고용 강조주간 운영	○장년(50세~64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연령보다는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년 고용을 촉진
9월 16일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발표	○5개 업종별(금융업·제약업·조선업·도소매업·자동차부품업)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을 개발
12월 4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
3~12월	○장년고용포럼 운영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 시행을 1년 앞둔 상황 등을 고려, 시급히 정책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큰 단기과제 위주로 주제 선정 및 논의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장애인고용촉진>		
4월 15일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정부포상 유공자표창,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표 등 (장관님 치사 및 시상)
4월 30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저조기업 명단 공표	○2014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 : 2.54% – 정부(공무원) 2.65%, 정부(비공무원) 3.75%, 공공기관 2.91%, 민간기업 2.45% ○장애인고용저조기업 802개소(정부 9, 공공기관 18, 민간기업 775) 명단공표
8월 28일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고시 개정	○지원고용 취업자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중증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신설
9월 15일 ~18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등 에서 9월 15일~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5개 직종에 338명이 참가하여 105명이 입상하였음
10월 29일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장애인고용저조기업 615개소(정부 9, 공공기관 18, 민간기업 588) 명단공표
10월 30일	○업종별 고용사례집 발간·배포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업종별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12월 9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인상 (월 71만원→ 월 75.7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6호)
12월 11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부담금 감면요건 정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8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월 50만원 → 월 60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7호)
12월 15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시 장애인 고용조건(2년간 20명 고용유지) 명확히 규정 ○편의시설 설치·구입 비용의 사업주 지원한도를 기존의 무상지원금 지원조건 및 한도와 같게 개선·보완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 내역 반영(('15) 6,000원 → ('16) 6,3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사회적기업>		
1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 개정 및 공고	○계속고용 인센티브 도입 – 인증 후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인증 3년차 때 지원금 20% 가산 지원 ○부정수급 제제강화 ○전문인력 지원 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10인 → 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2월~10월	○기업-사회적기업 협력모델 개발 지원	○IBK기업은행(2.12), 현대백화점그룹(4.3), 이크레더블(5.13), KDB나눔재단(6.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6.19), 한국남동발전(9.3) 네이버(~9.22), 인천국제공항공사(10.13)
3월~12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실시	○연 6회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인증 – 총 2,976개소가 인증을 신청하여 1,640개소 인증, 이 중 1,506개소 활동
3월~12월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평가위원회(6.18) 멘토형 경영컨설팅 워크숍(6.29), 성과공유대회(11.27) ○기초컨설팅 개선 간담회(7.21), 참여자 간담회(10.29), 사례집 발간(12.16)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현장 모니터링(9.24), 권역별 간담회(11.6), 모니터링 최종보고(12.7)
4월 9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총 409팀을 지원하여 379팀이 창업에 성공
4월 30일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공고 – 15년 실적 3,550억원, 16년 계획 4,124억원
6월 3일~30일	○크라우드 펀딩대회 개최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 개발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대회 개최 – 총 87개팀 참여, 167백만원 펀딩
7월 3일~5일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부산광역시에서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개최 – 국제포럼, 문화페스티벌, 타운미팅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인식 확선 –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0월 30일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개최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키 위해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 총 909탐 참가하여 30개팀 입상

5 직업능력정책국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5일	○타부처 국기훈련 위탁기관(과정) 선정	○4개 기관 9개 훈련과정 선정
1월 8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기관 확대 및 지역사정에 따라 지역위원회 탄력적 운영 등 규정 보완
2월 12일	○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평가 대상기관 3,260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2월 23일	○'15년도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선정	○취업사관학교 6개 기관 6개 과정 선정
3월 2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 시범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 162개 기업 496명 학습근로자 훈련실시
3월 12일	○「NCS 기반, 공공기관 채용 JOB Concert」 개최	○대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NCS기반 공공기관 채용절차', '시험방식', '직무기술서', '직무중심 면접방식' 등을 설명하는 등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 간 연결의 장 (공공기관 3개소, 취업준비생 500여명 참석)
3월 12일	○취업준비생을 위한 능력중심채용 사이트(onspec.ncs.go.kr) 개설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확산과 관련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사이트 개설·운영
3월16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비정규직근로자 대부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확대
3월 24일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MOU 체결	○'15년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130개 공공기관과 기재부·고용부 장관 및 교육부 차관 등이 참여하여 MOU 체결
3월 25일~ 3월 26일	○2015 고졸인재 JOB Concert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및 일학습병행제 특별홍보관' 운영 (17,000여명 방문) * 전체 참가자 3만여 명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홍보 리플릿 및 NCS·일학습병행제 카툰 배포 등 홍보
3월 25일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개편 TF 구성	○재직자 훈련 지원 체계 개편, 부정수급 제재 방안 마련 등
3월 30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에 따라 훈련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평가면제 등
4월 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4월 22일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심사	○대부대상 기관 확정(31개 기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4월 27일	○직업훈련과정 15년도 상반기 통함심사 공고	○2,847개 기관, 15,476개 과정 신청
3월 31일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선정	○가천대, 대구대, 목포대 등 13개 대학 선정
4월, 7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	○11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4월) –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조직·관리체계 구축 ①기계산업, ②금형·금속가공·표면처리·용접산업 ③섬유제조·패션산업, ④정보기술·사업관리, ⑤전자산업, ⑥방송·통신기술산업, ⑦화학산업, ⑧재료산업, ⑨전기·에너지·자원산업, ⑩금융·보험산업, ⑪경영·회계·사무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가선정(7월)) ⑫디자인, ⑬조선·해양자원
4월 8일 ~13일	○지방기능경기대회	○서울특별시 서울공고 등 102개 경기장에서 4월 8일~13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9개 직종에 8,271명이 참가하여 2,014명이 입상하였음
4월 17일	○'15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추가 지정	○총 4개 기관 5개 교육·훈련과정 추가 선정 * '15년 총 32과정 운영
4월 29일	○취업준비생을 위한 능력중심채용 상설교육과정 개설	○취업준비생들에게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에 대한 대비 및 준비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설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 인천, 대전 → 대구로 확대
4월 29일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고용부–국방부 MOU체결	○軍전역예정자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 및 MOU 체결
5월 15일	○제4차 NCS 운영위원회 개최	○NCS·NCS 학습모듈 개발실적 및 향후계획, NCS 활용·확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NQF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심의 * 고용부·교육부 차관 등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참여
5월 19일	○훈련생 이수자 평가 기준 확정 및 평가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적용 장기과정(350시간 이상)에 대한 과정평가 실시
6월 8일	○2015 스펙깨기 능력중심 채용박람회	○"능력중심사회 채용선언" – 정부, 산업계, 기업, 공공기관, 학교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의 선언식 ○NCS·일학습병행제 홍보관 운영 ○NCS활용 공공기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지원·관리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6월 15일	○NCS기반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훈련비용 실태조사 실시	○정부지원, 비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훈련비) 조사: 3,500개 기관, 23천개 과정
6월 16일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선정	○지역·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발굴·선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선정
7월 1일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HRD-NET 개편 착수	○훈련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정보망 구축
7월 7일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 추가 심사 실시	○(신청)두드림직업전문학교 등 12개 기관 ○(심사 일정) 7.2 서류 심사, 7.3 면접심사, 7.7 최종심사, 확정통보 7.10.
7월 10일	○직업훈련과정 '15년도 상반기 통합심사 결과 발표	○1,880개 기관, 8,588개 과정 선정
7월 21일	○능력중심원정대 출정식	○「능력중심원정대」 출정식 개최 – 일학습병행제·NCS 정책설명 및 고객중심 서비스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원정대 위촉 – 일학습병행제·NCS 분야별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각 15명씩 총 30명 위촉
7월 29일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사업단 선정	○두원공과대, 전남도립대, 영진전문대 등 5개 권역 16개 사업단 선정
8월 1일	○훈련기관 품질관리를 위한 훈련기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8월말)	○시설, 장비, 교·강사 등 훈련기관 정보 등록→기관평가, 과정심사 등과 연계하여 관리
8월 10일	○'16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국가기술자격 종목 선정	○총 30개 종목 선정 공고('15년 15개, '16년 15개)
8월 11일 ~16일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브라질 상파울루 안헴비에서 8월 11일~16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총 41개 직종에 45명이 참가하여 통산 19번째 5연체의 종합우승
8월 31일	○일학습병행제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 운영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현장교사, 재직근로자 등의 고숙련 직무기술 향상을 위한 고숙련 마이스터 육성과정 시범 운영
9월 1일 ~24일	○직업능력의 달 행사 실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유공자 포상 및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자 시상 및 증서수여(9월 1일) –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정부포상(훈장 4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21점, 장관표창 55점) – 대한민국명장 18명, 숙련기술전수자 8명,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1개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9.15~1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9.22)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9월 4일	○2015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및 일학습병행제 특별홍보관” 운영 – ‘일학습병행제’ 및 ‘NCS’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책자, 리플릿, 기념품 배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및 NCS기반 채용 도입 공공기관 지원·관리
9월 17일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 경진대회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우수 훈련 사례, 학습 노하우 전수 등 우수사례 발굴·공유 홍보
9월 22일	○능력중심채용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사담당자, 취업지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능력중심채용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 – 능력중심채용 도입 우수사례 발표 및 능력중심채용 발전방안
9월 30일	○’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공표(HRD_Net)	○3년인증 57개소, 1년인증 1,149개소 등
10월 2일	○직업훈련과정 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공고	○3,129개 기관, 29,486개 과정 신청
10월 6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대기업 및 선도기업 19개소, 고용부·청년위원회·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여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MOU 체결 – 능력중심 채용문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 기반 마련
10월 5일 ~12일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10월 5일~12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9개 직종에 1,928명이 참가하여 285명이 입상하였음
10월 19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 선정	○고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51개교 추가 선정(누적 60개교)
10월 30일	○’15년도 직종별 우수훈련기관 선정 공고	○직종별 우수훈련기관 119개소 선정
11월 2일	○’15년~’16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15년~’16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절차 완료 * (결과) 215개 과정 중 149개 과정 통과 (’15년 하반기 20개, ’16년 129개) * 과정모집(~9.4) → 서류(9.9~10)·현장심사(9.16~10.8)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확정(~11.2)
11월 9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대부 지원 완화 등
11월 24일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산업계 본격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경진대회’ 개최 * 한국서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 기관 선정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1월 25일	○원격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 확대(최소훈련시간 16H→8H), 원격훈련비단가 상향조정, 스마트 훈련 지원제도 신설
11월 26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범위 확대, 6년 도과 기관의 신축적 투자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시 청문 등 심의기능 강화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 근거 마련 등
12월 3일	○한-호주 자격상호인정 전문가 회의	○한-호주 간 자격 상호인정 관심분야(IT, 전기, 이미용, 조리 등)의 해외 자격제도 운영사례 학습·공유, 관심분야·수준 등의 적절성 논의 등
12월 15일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NCS 활용확산을 위해 우수 활용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을 발굴하여 홍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채용)엘티엔, 광명전기, 모두투어, (훈련) 블랙야크, 건강사랑,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교육) 광주공고, 천안연암대학
12월 16일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인정 결과 공고	○일반고 특화 훈련 311개 과정 선정
12월 24일	○'15년 제1회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1·2차) 합격자 발표	○'15년 제1회 외부평가(1·2차) 실시 및 합격자 공고 * (종목) 기계설계산업기사 등 7종목, (대상) 구미대학교 등 11개 기관 * (1차 필기) 12.5, (2차 작업형) 12.12~20, (합격자발표) 12.24 → 응시대상 174명 중 50명 합격
~12월	○'15년 NCS 신규개발 및 보완 완료 ○'15년 NCS 활용지원 완료 ○'15년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및 보급 완료	○빅데이트분석 등 50개 NCS 신규개발 완료 ○경영기획 등 79개 NCS 보완 완료 ○130개 공공기관 대상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컨설팅 완료 ○890개 민간기업 대상 NCS 활용컨설팅 완료 ○능력중심 채용모델 3개 직군 개발 완료 * 정보시스템운영, 토목공학기술, 해외영업원 ○능력중심 채용모델 180개 기업 대상 보급 완료
12월 30일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심사 결과 공고	○타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62개 과정 선정
12월 31일	○직업훈련과정 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결과 공고	○2,357개 기관, 18,656개 과정 선정
12월 31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상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장훈련 실시(상시)	○참여기업 선정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인증 ('15.12월말 기준) - 5,764개 기업 참여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인증을 받은 2,705개 기업 소속 학습근로자 10,869명 훈련실시

6 노사협력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15일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 사업계획 시달 및 공모	○노사 공동 수행하는 파트너쉽 향상 프로그램 소요비원 지원(단위사업장 30백만원, 단체사업장 40백만원 한도로 지원)
1월 25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15년 사업계획 설명 및 우수사례 공유(지자체,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 대상)
3월 1일 ~12월 30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재정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 77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61개) 2,400백만원
3월 3일 ~12월 30일	○노동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 39개소, 4,016백만원 지원
3월 25일	○임금체계 개편 컨퍼런스 개최	○①한국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세션②임금체계 개편 사례와 과제, 세션③부문별 임금체계 이슈와 과제 등 논의
4월 1일 ~12월 30일	○임금체계 개편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학회, 경제·경영 관련 민간연구소 등 전문가 등 20여명 구성, 임금체계 개편 방향 등 논의
4월 30일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노사협력 유공자 232며에 대해 산업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등 수여
5월 7일	○30대그룹 CHO간담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성 인식 강화, 현장 변화·실천 당부 등 의견수렴
5월 12일	○고용노동미래포럼 발족	○주요 고용노동과제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포럼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5월 20일 ~22일	○독일 하르츠위원장 간담회 및 노사정 대표 간담회	○노동개혁 방향 논의 및 공감대 형성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구조개선에 대한 원칙과 방향 합의 이후 총 65개 과제에 대한 세부 합의 도출
10월 15일	○노사의 사회적책임 행위준칙 마련	○원·하청, 정규·비정규 등 노사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행동 준칙 마련
10월 21일 ~11월 10일	○지역별 노동개혁 설명회	○9.15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세부 합의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회 개최
10월 28일	○노사문화 대상 선정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대상(大賞) 10개기업 선정
12월 18일	○노사상생협력 유공 시상식	○노사상생협력 유공자(38점) 및 지역노사민정협력 분야(27점)

7 근로기준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일 : '15.7.1.)	○소액체당금 시행(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부정수급 주도자에 대해 추가 징수 연대책임
1월~4월	○근로시간·통상임금 제도개선 논의	○근로시간·통상임금 등 제도개선 쟁점 논의 – 노사정위 구조개선 특위 논의 –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운영으로 자동차 업종 내 장시간 근로 개선 논의(1~11월)
4월~9월	○장시간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장시간근로 주요업종 지도·감독 – 지방관서별 장시간근로 감독사업장을 선정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후속 개선과정 지원 –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253개소 실시) – 연장근로한도 위반사업장 134개소 시정 조치
9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및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사정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이견 조율 노력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 대타협 도출(9.15)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당 대표 발의(9.16)
9월	○통상임금 정의 및 제외금품에 관한 노사정 합의 및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통상임금 정의 및 제외금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9.15)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여당대표 법안 발의(9.16)
2월 2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	○2014년도 9월부터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운영한 우리사주제도개선 TF 운영결과를 발표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유인 제고, 우리사주 기반확충 등
3월~11월	○제36회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노·사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로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근로자 정서함양 및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에 기여 ○분야 : 음악, 연극, 미술, 문학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3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15.5.1)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이 되는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월~12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중소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50% 매칭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 매칭지원('16.1.21시행예정)
5월 29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지연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 신설
6월 15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15.7.1.)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 퇴직일 기준 6개월이상 사업에서 퇴직하고,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무면허 건설업자는 직상수급인을 기준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최종 6개월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월수로 나누어 산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6월 30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 '15.7.1.)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의 비용지원 한도를 사업장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일 : '16.1.21.)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 ○둘 이상이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
12월 11일	○2015년도 우리사주대상 시상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을 증진한 업체를 선정·시상
12월 1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15.12.15)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전세보증금, 대학등록금 등) 및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확대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추가 –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한도 확대(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12월 31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 대상 추가, 융자 대상 소득기준 개선(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융자 명칭 변경(소액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
1월~12월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을 채용하여 전문적·효율적 노동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인원: 변호사 20명, 공인노무사 26명, 민간조정관(93명)(12월말 현재) – 지원내용: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사건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 등 – 실적: 체불, 부당해고 등 총 129,368건 상담, 40,832건 조정 시도, 26,835건 해결, 기타 소송 지원 업무 등 수행
2월 6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한도 상향조정 등 (세대당 한도액:1,500만원→2,000만원)
2월 11일	○임금체불 근절·근로자 생계보호 대책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고의 상습적 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등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12월	○고용차별개선사업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을 통해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네트워크구축·홍보 등 현장에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의사가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제도 설계, 보상·평가제도 설계, 정규직전환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1월~12월	○장시간근로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장시간근로개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휴가사용 촉진,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등 기업 실정에 맞은 컨설팅을 지원(453개소) –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1월~12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TV, 라디오, 기획기사, 온라인 이벤트 등의 홍보를 통해 산업현장의 근로 문화와 관행의 개선, 노사 및 국민들의 공감대와 인식 개선
1월~12월	○근로시간·통상임금 등 제도개선 논의	○근로시간·통상임금 등 제도개선 논의 – 노사정 실무협의,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 환노위 의원 설명, 입법 논의 요청 – 중소기업 CEO 간담회, 경총 간담회, 노동계·경영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개최
2월 14일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운영	○근로시간·통상임금 등 쟁점 논의 – 근로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집중 논의 (노사정 대표회의 5회, 교섭단회의 5회, 지원단 회의 7회, 공청회<4.9, 4.10>)
3월~12월	○장시간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장시간근로 주요업종 지도·감독 –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 지청에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설치,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감독(251개소 실시) – 연장근로한도 위반사업장 168개소 시정 조치
3월~11월	○파견·사용업체 점검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대한 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을 통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일시·간헐적 불법파견 기획감독(3~5월) 등 실시 –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소 ▸안산·시흥지역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9월) – 파견업체·인력공급업체·사용업체 103개소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3월 24일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시행일: '14.9.25)	○ 시행령에 규정된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월 4일	○ 제35회 근로자 가요제 개최	○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노·사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로 근로자들의 음악적 감성과 기량을 나누는 경연대회
5월~7월	○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점검	○ 기간제근로자 등 다수고용사업장 304개소 지도·점검 실시 – 28개 사업장에서 총 30건의 차별사례 적발, 시정지시
5월 22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신설 등
5월 22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신설 등
6월~9월	○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 보건·금융업종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
6월 27일	○ '15년 최저임금 의결	○ 시간당 5,580원(7.1% 인상)
7월 12일	○ 제35회 근로자연극제 시상식 개최	○ 근로자문화예술제 중 연극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최고상 수상작 앵콜 공연
7월 28일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 '14.7.29.)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우수인력 등에 우선부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사가격을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8월 5일	○ '15년 최저임금 결정고시	○ 시간당 5,580원(7.1% 인상)
9월 24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9월 25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0월 15일	○ 제35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합동시상식(미술·문학분야) 개최	○ 근로자문화예술제 중 미술·문학분야 수상자에 대한 합동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10월~11월	○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 숙박·유통업종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
10월~12월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36개소)
10월~12월	○ 사내하도급 다수활용업체 점검	○ 무허가파견·사내하도급 다수 활용사업장 정기감독 실시(210개소)
12월 10일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 모집인 교육수탁기관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반복 운영하려는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 등
12월 22일	○ 2014년도 우리사주대상 시상식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을 증진한 업체를 선정·시상
12월 24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에 따른 소득 요건 개선 등
12월 24일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 근로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 한도액 인상에 따른 신용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 (1명당 한도액: 1,000만원 → 2,000만원)

8 공공노사정책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3월	○ 공공기관 권역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 공공기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확산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58개소
6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원단」 구성·운영	○ 공공기관이 소재한 37개 지방관서별로 지청장을 중심으로 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감독관, 센터 지원금 담당자 등으로 구성 ○ 법과 원칙에 맞는 노사교섭 지도 및 정부 지원금 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 상생고용지원금) 안내
6월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제작·배포	○ 정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16.5.7)」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유형, 도입사례 및 Q&A 등이 담긴 매뉴얼 발간 * 35개 정부부처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
7월	○ '13~'14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및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발표	○ '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57천여명 전환 발표 ○ '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은 약 22만 명으로, '12년 대비 약 3만2천명 감소 ○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발표 * 2단계(16~17년) 상시·지속업무종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추진 등
9월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고용부-기재부)	○ 인사·노무담당자, 노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 권고안 및 정부지원제도 등 설명 ○ 권역별로 총 4차례 진행 * 총 99개소, 136명 참석
11월	○ 비정규직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 공공부문 全기관 대상 실태조사 및 전환실적 조사 설명회 개최 * 대책 주요내용 및 조사방법 설명, 전국 9개 권역 총 13회 개최
12월	○ 공공부문 담당 감독관 워크숍	○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본부 및 지방관서의 역할 등 교육 * 공공부문 담당감독관 등 총 72명 참석(세종)
12월	○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15년 하반기 전환실적 조사	○ '15년 832개 공공부문 기관 대상 비정규직 인원 등 근로조건 현황조사 및 '15년 하반기 전환실적 조사

9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12월	○공정안전관리(PSM) 차등관리	○대상 : 1,148개소 – 우수(P등급, 104개소), 보통(S등급, 487개소), 불량(M+·M–등급, 557개소) ○점검 : 654개소 – 시정조치 4,999건, 과태료 1,705건
1월～12월	○산재취약계층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 1,040회, 58,911명 –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58종 199,600부) ○고령·여성 근로자 지원 – (교육)고령 : 54,383명, 여성 : 50,268명 –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25종 50,200부)
1월～12월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지원	○근로자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국고지원(8,176개소, 28.73억원)
1월～12월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근로자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63,131명 (45.28억) 지원
1월～12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조사보고서 총 309건 제출 –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검토 후 신청업체 및 관할 지방 관서에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보
1월～12월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기술지원 : 5,762개소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적시지원 2,662개소 –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 개선지원 3,140개소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지원 : 1,378개소 ○홍보자료개발·배포 : 14종 207,400부
1월～12월	○노사주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비용 지원	○비용지원 : 475개소 7.60억원 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연합체)를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 지원
1월～12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확산지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참여 사업장 : 8,881개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28개소
1월～12월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20개소) – 근로자건강상담(147,025명),근골격계질환예방(149,379건), 뇌심혈관질환예방(98,866건), 직무스트레스예방(35,240건), 근무환경(작업관리) 상담(39,735건), 의사상담(79,158건)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 30,290개소 91,226회 지원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12월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 운영	○사망재해 다발 등 24개 조선업체 관리
1월~12월	○고위험 사업장 감독관 전담관리 실시	○화재·폭발·누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약 10,000개소를 선정, 밀착관리 실시 – 집중: 3,000개소, 관심: 7,000개소
1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하도록 함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 자격대상자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함
2월～12월	○사고성 사망재해 집중관리	○재해분석을 통하여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Target 선정 – 제조 46,000개소, 건설 60,000개소, 서비스업 40,000개소 ○기술·재정·교육·안전검사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패키지(Package) 지원
2월 9일 ～3월 6일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감독	○해빙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하여 건설재해 예방 – 지반 및 토사붕괴 등 위험이 있는 현장 1,066개소 – 조치: 사법처리 187개소, 작업중지 56건, 시정지시 2,536건, 과태료 629개소
2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면서 유사한 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인력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2월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으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사연구원 자격 규정을 삭제
3월～10월	○작업환경측정 분석능력평가	○측정기관 금속 및 유기용제 분석능력 정도관리 – 상반기 ・금속: 참가 131개소 / 적합 128개소 ・유기용제: 참가 132개소 / 적합 126개소 – 하반기 ・금속: 참가 125개소 / 적합 118개소 ・유기용제: 참가 126개소 / 적합 122개소
4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 등
5월 4일 ～6월 16일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감독	○검찰 합동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장마철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 개선 –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592개소 – 조치: 사법처리 308개소, 작업중지 61건, 시정지시 1,654건, 과태료 457개소
9월~12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 점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사업장 1,136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 – 위반사업장 702개소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7월 2일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1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제고(우수 216개사, 불량 100개사)
7월 6일 ～11일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제48회 산업안전보건기념의 날(7월 6일), 국제안전보건 전시회(7월 6일~7월 9일),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7월 6일~7월 10일) 등 개최 – 산업재해예방유공자 포상(87명) : 정부포상 23명 (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9, 장관표창 64명)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7월 31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이고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 중 39개 업체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 – 지정기간: 2015년8월1일~2016년7월31일(1년간) – 혜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 면제(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
8월 5일 ~9월 10일	○건설업 정기감독 실시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파급효과 확산 – '14년도 환산재해율 규모별 하위 10% 이하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274개소 – 조치: 사법처리 74개소, 작업중지 16건, 시정지시 506건, 과태료 207개소
11월 9일 ~11월 27일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감독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개선 –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 등이 있는 현장 1,475개소 – 조치: 사법처리 419개소, 작업중지 129건, 시정지시 2,542건, 과태료 737개소
12월 16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2014년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을 우리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공고 제2015-360호) – 2014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204개소)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중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19개소)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45개소)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7개소)
12월	○2014년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 발간	○근로자 건강진단(특수, 임시) 56,881개소, 1,411,045명 실시 – 유소견자 : 직업병(D1) 8,678명, 일반질병 (D2) 38,738명 – 요관찰자 : 직업병(C1) 137,157명, 일반질병 (C2) 196,577명
12월	○2014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발간	○산재보험제도 연혁, 산재보험시설 소개, 산재보험 적용·징수·요양·보상·재활·의료사업 소개, 산재 보험 통계자료 제공 등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2월	○2016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58개) 산재보험요율 고시 – 평균요율 17.0% – 최고·최저 : 340%(석탄광업), 7%(금융 및 보험업 등 5개 업종)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계단 안전난간대의 설치방법을 개선하고, 밀폐공간 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로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 및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

10 국제협력관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1월 27일 ~29일	○ 한-ILO 협력사업 기여효과 평가 세미나	○ 동남아 주요 4개국의 한-ILO 협력사업 기여 효과 평가 세미나 및 ODA 협력방안 등 논의
1월 27일 ~31일	○ ADBI-OECD-ILO 아시아 노동이주 원탁회의	○ 이주 거버넌스를 위한 효과적 제도 구축방안 등 논의 및 이주 노동시장 동향 등 파악
2월 24일 ~3월2일	○ 2015 G20 고용작업반 및 G20-OECD 양질의 도제제도 컨퍼런스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발표 및 일학습 병행제 추진현황 등 발표
3월 15일 ~29일	○ 제323차 ILO 이사회	○ '16~'17년 사업·예산 심사, 세계 일자리의 사회적 도전 관련 최근 동향과 ILO 역할, 사회적 보호 기반 강화 등 주요 안건 적극 참여 및 대응
4월 12일 ~18일	○ 제126차 OECD ELSAC 및 제45차 고용작업반	○ 고령화, 정신건강과 근로 등에 대한 우리의 주요 정책 소개 및 회원국간 정보 공유 등
4월 22일 ~26일	○ 한-브라질 고용노동 분야 협력 MOU 체결	○ 양국간 경험 및 지식공유, 인적교류와 진출기업 지원 등 포괄적 상호 협력 강화
5월 2일 ~9일	○ APEC HRD 고위정책회의	○ 인적자원개발 분야 정책교류 강화 등 APEC 회원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5월 7일 ~10일	○ ASEAN+3 고위급회의	○ Post-2015 시대 아세안+3 협력 우선순위 및 협력 현황 등 논의
5월 13일 ~18일	○ 제37차 APEC HRD 실무그룹회의	○ 실무그룹회의 아젠다 확정 논의, 연간계획 및 회원국별 사업계획·성과 발표, 역내 노동이동성 활성화 방안 토론 등
5월 30일 ~6월15일	○ 제104차 ILO 총회	○ 본회의 기조연설 등을 통한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적극 설명과 각 분과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 개진 및 국제노동기준 설정 관련 논의 동향 수시 파악 등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9월 2일 ~6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발언 및 호주 등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FTA 노동장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분야 협력 방안 등 논의
10월 20일 ~25일	○UN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고용노동분야 질의에 대해 우리의 입장 및 상황 적극 답변 등
10월 31일 ~11월14일	○제325차 ILO 이사회	○개발협력 주요 사업,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협약권고 메키니즘 등 주요 안건 적극 대응
11월 3일 ~9일	○한-미 FTA 공동협력사업 워크숍	○한미 기업 해외공급망 근로기준 향상 공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향후 계획 논의 등
11월 4일 ~8일	○제127차 OECD ELSAC 회의	○고용노동장관회의 준비사항 및 공동선언문 초안 , OECD 정책권고문 검토
11월 13일 ~24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세미나 및 현지 기업 간담회 개최 등 노무관리 지원 활동
12월 1일 ~6일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아시아와 유럽 간 고용노동정책 교류 및 협력 등 논의

* 고용노동백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 년판 ○○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하는 관례를 지키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백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044) 202-70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백 서 (2016년판)

2016년 8월 일 인쇄
2016년 8월 일 발행

발 행 ▌ 고용노동부
편 집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인 쇄 ▌ 동명기획 (☎ 044-868-7542)

비 매 품